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기 상 산 업 진 흥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명래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영세·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 등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상사업자들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상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,

현재, 기상청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이 그 범위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바,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9. 00. ~ 10. 00.) 결과,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최근 3년의 범위에서 수요자에게 제공한 기상정보에 관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”를 “정당한 사유가 없으면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최근 3년의 범위에서 수요자에게 제공한 예보 자료, 기상관측 자료, 수치 자료 및 위성 자료 등 기상정보에 관한 자료
2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등록요건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
-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.

별표 1 중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설
사무실

별표 1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“사무실”이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 기자재를 갖춘 건축물(주택을 포함한다)을 말하며, 둘 이상의 기상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81 - 0848